



재해 개요

- 2023. 2. 9.(목) 12:57경, 충남 □□시 △△면 소재 「○○○○」 현장에서, 상부 작업발판(그레이팅)에서 떨어진 ○○제거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작업발판(그레이팅)이 탈락 되면서 바닥 (높이≒16.4m)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스틸 그레이팅 발판 안전성 미확보**
 - 그레이팅 4지점에 클립을 체결하여 구조체(H-Beam)에 고정하였지만 사용단계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으로 인한 클립의 볼트풀림으로 인해 고정기능을 상실하였으나, 주기적인 점검·유지 관리·이탈방지조치 등 작업발판의 안정성 미확보
- 하역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 유해·위험방지 업무 미수행**
 - 관리감독자는 하역 작업 전 통행설비·하역기계·보호구 및 기구·공구를 점검·정비하여야 하나, 작업발판으로 사용된 스틸 그레이팅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, 재해자가 작업을 할 때 이들의 사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 유해·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미수행



재해 예방 대책

- 스틸 그레이팅 발판 안전성 확보**
 - 작업특성 및 방법에 따른 진동, 충격 등에 의해 발판·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그레이팅의 클립 고정상태*가 풀릴 수 있으며, 그레이팅에 설치된 클립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세심하게 점검·유지·관리하여야 함
 - * 변경하는 강판 및 자재의 상재하중 등 추가하중에 대한 구조검토 실시 후 설치
- 하역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 유해·위험방지 업무 수행**
 - 하역작업 시 관리감독자가 통행 설비·하역기계·보호구 등 정비·점검 후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유해·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작업 근로자가 2인1조로 작업하도록 관리·감독 실시하여야 함
- 위험성의 인식·관리·전달 강화**
 - 안전작업에 대한 절차를 포함한 안전작업 절차서를 작성하고 일일안전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성에 대하여 교육 후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